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 협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농약 직권등록 및 기준 설정 업무 협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각각 한시정원으로 증원하려는 내용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4.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2. 15. ~ 2. 17.)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총리령 제 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4월 30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③ 농약 직권 등록 및 기준 설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30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별표 10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0]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4조 관련)

1. 제34조제1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2월 28일)

총 계.	1
일반직 계	1
보건연구사 또는 공업연구사	1

2. 제34조제2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4월 30일)

총 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또는 식품위생사무관	1

3. 제34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4월 30일)

총 계	1
일반직 계	1
농업주사	1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4조(한시정원) (생략)	제34조(한시정원)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설>	②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4월 30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은 교육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신설>	③ 농약 직권 등록 및 기준 설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30일까지 별표 10에 따른 한시정원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두며, 별표 10의 정원 1명은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